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자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민자회사(2개) 추가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(특별자치도)을 반영하고,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 ‘2024년 5월 31일’에서 ‘2027년 5월 31일’로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의 유지·보수 등에 관한 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2024년 5월 31일”을 “2027년 5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2 제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란 및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란 다음에 경기동서순환도로 주식회사 및 화성광주고속도로 주식회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경기동서순환도로 주식회사	화성광주고속도로 주식회사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별표 2 제3호 중 “강원도”를 “강원특별자치도”로 하고, “전라북도”를 “전북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조사 및 입력의 교육 등) ① (생 략)	제19조(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조사 및 입력의 교육 등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20조(보안관리) ① (생 략)	제20조(보안관리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22조(유효기간) 이 예규는 「훈 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 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 는 <u>2024년 5월 31일</u> 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22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2027년 5월 31일</u> ----- -----.